

충청북도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1. 6.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이유

국제화 시대에 우리도와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 교류활동을 확대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기 위함

주요골자

- 우리도의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함 (안 제3조)
- 외국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제의받을 경우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안 제4조)
-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안 제5조 제1항)
-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 제6조 제1항)
- 자매결연은 양 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에서 서명, 결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할 수 있음 (안 제6조 제2항)

- 자매결연 체결시는 가급적 도의회 의원의 입회하에 체결하되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결연서 사본을 첨부하여 도의회에 결과를 통보함 (안 제6조 제6항)

-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음 (안 제7조 제2항)

충청북도의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자매결연의 대상)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 ①충청북도가 외국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각종 자료를 받아 지역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외국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자매결연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외교적 특수성 등

제5조(사전교류) ①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자료 및 의견교환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팸플릿 등 자료교환을 확대하고 서신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강구한다.

③상호방문시에는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자매결연의 체결)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자매결연은 양 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에서 서명, 결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할 수 있다.

③자매결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도에서 서명할 경우 : 도지사의 명의로 초청대상자에게 초청장을 발송 하되 방문시 주요일정 등은 사전에 협의 결정하며 방문 기간 중에는 주요산업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시찰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주요일정은 피초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2. 외국자치단체에서 서명할 경우 : 방문일정은 외국자치단체와 협의하되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를 사전에 정하여 방문계획

을 통보하고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국의여행에 관한 제반절차에 의하여 방문한다.

④상호방문시 경비부담은 초청자가 체재비를 부담하고 피초청자가 왕복 항공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의하여 양 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하여 각각 보관한다.

⑥자매결연 체결시는 가급적 도의회의원의 입회하에 체결하되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결연서 사본을 첨부하여 도의회에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도지사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